



Monitoring Reports
모니터링 리포트

Vol.27 _ 2017년 4월

이 사람의 향기 I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맺어준 인연
안소울 이용자, 김연아 활동보조인

포커스 I

2017년 장애인 예산의 허와 실
장애학생 차별하는 '장학숙' 자치법규의 개선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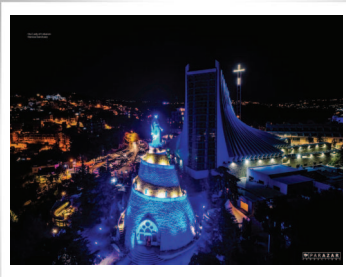
이슈포착 I

뇌병변·언어장애인 의사소통권리 보장 토론회 소고

이 미 지
단 상



태국 '마하나톤타워'



레바논 '성모마리아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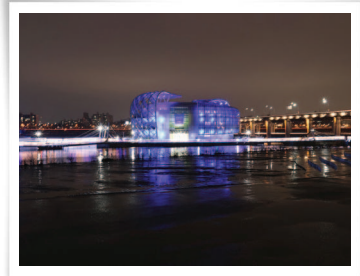
네팔 불교 성지 '보드나투 스투파'



대만 '타이페이 101타워'



사우디아라비아 '킹덤타워'



한국 '세빛 둥둥섬'

4월2일은 UN이 정한 '세계 자폐인의 날(World Autism Awareness Day)'입니다. 이날은 자폐인을 기억 하자는 의미로 전 세계 랜드마크에 파란색 불빛을 비추는 이벤트를 합니다. 이 행사는 서양에서 주로 진행되었는데, 최근에는 아시아 여러 나라도 동참하고 있어서 고무적입니다. 전 세계 모든 자폐인들이 이 사회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희망의 파란색 꿈을 꾸면서 살았으면 합니다.

Monitoring Reports 모니터링 리포트

Vol.27 _ 2017년 4월

CONTENTS

	이미지 단상	
02	편집자 편지	선거의 계절에 민주주의의 꽃이 활짝 피길
04	칼럼	장미대선, 모두에게 공정한 선거여야 한다
06	의정돌보기	'차별받을 기회' 조차 없는 문화·예술 분야
10	이 사람의 향기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맺어준 인연 안소율 이용자, 김연아 활동보조인
17	포커스1	2017년 장애인 예산의 허와 실
22	포커스2	장애학생 차별하는 '장학숙' 자치법규의 개선과제
29	이슈포착1	장애 유형에 따른 재난안전 매뉴얼이 필요하다
35	이슈포착2	세계 자폐인의 날을 맞이한 각국의 반응
40	생활속 모니터링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성 모니터링
44	영화평	2016년의 한국영화에는 어떤 장애인들이 등장할까요? - 류미레 (다큐멘터리 감독)
49	포럼은 지금	

선거의 계절에 민주주의의 꽃이 활짝 피길

수천만 촛불의 열기를 타고 우리 역사에서 처음으로 대통령이 탄핵된 상태에서 대선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 어느 선거 때보다 민주주의를 향한 간절함과 유권자가 던진 한 표의 소중함이 절절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이 글을 읽는 독자님들도 5월9일 대선에 꼭 참여하여 민주 시민의 의무를 다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호 <이 사람의 향기>에서는 서울 중구길벗장애인자립센터에서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 여성 안소울님과 그의 활동보조인 김연아님을 만났습니다. 길벗센터 10주년 기념식에서 이례적으로 나란히 상을 받는 모습이 인상적이어서 인터뷰 신청하였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이용자-보조인 관계를 맺으면서 개인적으로 어떤 애환과 곡절이 있었는지, 또 활동지원제도에 포함된 양 당사자들로서 현행 제도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포커스>는 최근 장애학생의 입사를 배제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장학숙 문제를 다뤄보았습니다. 지난 3월 12일 KBS 2TV '다큐멘터리 3일-전라북도 서울 장학숙'편을 시청하던 중, 장애학생들도 장학숙에 입사할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는 전국 장학숙 관련 조례, 규칙, 규정을 전수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관련 자치법규를 제정한 자치단체 43곳 중 23곳(53.49%)에서 장애학생의 입사를 제한하는 차별 조항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치법규 없이 운영되는 장학숙도 상당수 있어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것보다 사정이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어 특별히 이번 호에 그 현황을 싣게 되었습니다.

<이슈포착>에서는 장애인 재난안전 매뉴얼의 필요성에 대해 외부 투고를 받았고, 또 4월2일 '세계 자폐인의 날'을 스케치하였습니다. 숭실대학교 기업재난관리학 연구원 김수동 선생이 보내준 "장애유형에 따른 재난안전 행동 매뉴얼의 필요성"은 일본과 비교할 때 한국의 장애인 재난안전 매뉴얼이 허점투성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세계 자폐인의 날을 맞이한 각국의 모습"에서는 이 날 행사를 보도한 세계

여러 나라의 뉴스와 파란 빛 밝히기(Light It Up Blue) 캠페인 사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생활 속 모니터링>에 실린 강창일 조례법률모니터단원이 기고한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성”은 대선을 앞두고 투표소 접근성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선관위는 장애인의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거소투표, 사전투표 같은 지원 방안을 내놓았지만 아직도 경사로를 비롯한 편의시설이 미비한 곳이 더러 있었습니다. “장애인이 편하면 모두가 편하다”고 합니다. 장애인이 편안하게 투표할 수 있다면 모든 국민도 편리하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선거의 의미를 되새겨 봅니다. 이탈리아 대문호 단테는 “기권은 중립이 아니라 암묵적 동조”라 했습니다. 장애인들도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하여 장애인 집단의 정치역량을 보여줄 때입니다. 또 프랑스 정치철학자 토크빌은 “모든 국민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장애인의 현명한 선택이 장애인을 두려워하는 정부를 만듭니다.

선거의 계절에 독자님들의 마음속에도 민주주의의 꽃이 활짝 피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4월

윤삼호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소장

장미대선, 모두에게 공정한 선거여야 한다

장애인 거소투표제도 개선해야

윤삼호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소장

얼마 전 장애인단체 행사가 있어 지방에 갔는데, 때가 때인지라 대선 이야기로 좌중이 시끌벅적해졌다. “아버지가 말도 없이 내 부재자 투표 용지에 기표를 했어요.”, “기표소에 함께 들어간 활동보조인이 이 사람 찍으라고 하더군요.”, “2층에 투표소가 있어서 기표소를 1층으로 가지고 와서 투표를 했어요.” 장애인의 선거권을 제약하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들렸다.

근데, 특별히 솔깃한 이야기가 들렸다. 지역 선관위 직원이 그 단체에 와서 장애인 10명 이상 모아서 거소투표를 해보라고 제안했다고 한다. 도대체 거소투표란 게 무엇인데, 선관위 직원이 중용하는 걸까?

거소투표는 사전에 거소투표신청을 한 선거인이 일반 투표소가 아닌 자신의 거소(居所)에서 투표하는 것이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중증 신체 장애인, 선상 근무자, 입원 환자 등 투표소까지 갈 수 없는 선거인이 개별적으로 기표를 하여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송부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장애인 거주시설을 비롯하여 병원, 요양소, 수용소, 교도소 등에 기표소를 설치하여 투표하는 것이다. 「공직선거법」(149조)은 이런 시설에 거주하는 10인 이상이 거소투표를 신청하면 기



거주시설 생활인이 선거 당일 일반 투표소에서 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기표한 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출처: 오마이뉴스>

표소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문제는 거소투표 당일 선거관리관을 파견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는 점이다. 정당 참관인이 참석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 사실상, 대다수는 시설 측의 자체 관리 아래 투표를 한다는 말이다.

특히, 장애인 거주시설의 경우 거주인 10명 중 8명은 발달장애인이다. 이들은 거동에 불편한 사람들이 아니라 의사표현 능력이 제한적인 사람들이다. 이들이 자의로 거소투표

신청을 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또 선거관리관도 정당 참관인도 없는 곳에서 보통선거, 직접선거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알 수도 없다. 실제로,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거주시설 내 부정선거 사례들이 보고된 바 있다.

그럼에도 선관위가 장애인들에게 거소투표를 중용하는 것은, 추측컨대 자신들의 편의 때문이 아닐까 싶다. 장애인들이 투표 당일 일반 투표소로 오게 되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27조)과 「공직선거법」(6조)에 따라 선관위는 장애 유형에 따라 각종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거소에서 투표하는 쪽을 선호하는 게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품게 된다.

그동안 선관위는 인력 부족을 구실로 거소투표 관리를 수수방관해 왔다. 시설 측에 의한 선거부정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이번 대선부터라도 선관위가 거소투표소에 직원을 보내 선거 과정을 꼼꼼하게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대선이 끝나는 즉시 거소투표소가 설치되는 시설에 반드시 선거관리관과 정당 참관인이 참석하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람들은 이번 선거를 ‘장미대선’이라 부른다. 1951년 영국 <더 타임즈>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기대하느니 쓰레기더미에서 장미가 피길 기대하는 게 낫다”고 썼다. 반세기가 지난 오늘, 우리는 보란 듯이 민주주의의 장미꽃을 활짝 피워야 한다. 장애인 거소투표제도를 개선하여 장애인을 포함한 모두에게 공정한 선거 기회를 주어야 가능한 일이다.



중증 장애인이 활동보조인과 함께 일반 투표소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사진: 웰페어뉴스>

‘차별받을 기회’ 조차 없는 문화·예술 분야

김용구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선임연구원

국가인권위원회의 통계에 따르면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을 기점으로 장애인 차별 진정 접수 건은 월평균 8.5건에서 111건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후 접수된 총 10,320건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몇 가지 짐작이 되는 게 있습니다.

우선 문화·예술·체육 관련 진정접수 비율이 3.0%로 가장 낮습니다. 경제적·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향유하기 쉽지 않은 분야라는 일반적인 시각에 비추어볼 때, 장애인들이 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법·행정 참정권 관련 진정접수 비율이 5%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같은 논리로 접근하면 장애인이 지역사회 참여, 의사결정, 효과적이고 적절한 사법적·비사법적 구제에 대한 접근 기회가 부족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고용 분야가 6.1%로 그 다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가능케 하는 가장 중요한 가교역할이 고용증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가장 많은 비중의 진정 건이 접수되어야 할 분야입니다. 고용 관련 차별 진정이 많다는 것은 곧 장애인이 일자리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 분야 관련 진정비율은 58.9%로 가장 높았고,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문화·예술·체육, 보험·금융을 제외한 재화·용역 일반, 시설물 접근, 정보통신 의사소통, 이동 및 교통수단 관련 진정 건이 해당 분야의 약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이동권과 접근권 차별에 막혀 경제활동과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의 의사결정 과정, 그리고 문화와 예술 분야에서는 ‘차별받을 기회’ 조차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히려 관련 차별 진정접수 비중이 낮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어느 하나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면 필연적으로 또 다른 권리가 침해되는 것처럼 장애인의 이동권 및 접근권 결핍이 필연적으로 고용과 참정권, 문화·예술·체육 분야 권리의 결핍으로 이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사회 장애인 인권 이슈가 문화·예술 분야로 옮겨가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동권 및 접근권 관련 편의제공 이슈가 당분간 주를 이루겠지요.

실제 편의제공이라는 용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장애인의 '주제넘은' 욕구를 충족시켜준다는 시혜적인 관점에 머물고 있습니다. 엄연히 법에 의무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시혜적 관점에서는 편의를 제공하지 않아도 법적 책임도 사회적 비난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편의제공은 법적 의무로 규정하고 있을까요?

인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로, 국가는 이를 향유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의 법과 제도, 정책, 관행 등으로 인해 권리를 향유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국가에 환경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곧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 투표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휠체어를 타야하거나 시각 손상이 있는 사람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제약이 있다면 그 자체로 국가가 참정권을 침해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국가가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지는 것이지 장애인의 '주제넘은' 요구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마치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이동과 안전을 위해 자전거 도로 설치를 요구하는 것과 같이 자연스러운 것이지요.

모니터링센터는 매년 17개 광역의회의 장애 관련 발언을 수집하고 분석해오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민선 6기 2차 연도(2015. 7. 1~2016. 6. 30) 회의록을 모니터링 하였습니다. 광역의회의 장애인 관련 발언들을 분류해보면, 복지일반 분야 다음으로 접근권 및 이동권 관련 발언이 17.3%, 고용관련 발언이 13.6%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장애여성, 정보 접근권, 자립생활 분야는 모두 3%미만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통계자료의 차별분야 이슈와 비교해보면 접근권 및 이동권에 대한 차별진정이 높은 만큼 광역의회 의원들의 발언 비중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차별진정 접수비중이 낮은 고용이나 문화·예술·체육 분야에 대한 발언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체육 분야 발언 비중이 9.7%에 달하고 있으니까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고용 및 문화·예술·체육 분야가 장애인 인권의 주요 이슈로 등장할 것이

란 점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당사자 모니터링 단원이 수집한 의정 발언을 스케치해보면 앞서 언급한 분야 외에도 장애인의 삶과 연관된 보건의료, 교육, 권익옹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장애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지만 법·제도·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장애인 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발굴하고 예상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응을 요구하거나 이를 환기시키는 발언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래 의정 발언에서 나타난 것처럼 장애인의 삶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법과 제도, 정책, 관행 등 모두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니까요. 앞으로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의 관점에서 지자체의 법제도 및 정책을 접근하고 그분들의 권리를 보호, 증진하는 의정발언을 더 많이 접해볼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서울시의회 269회 임시회 청년발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이윤희 의원 발언 중(2016. 8. 25)

이윤희 의원 잠깐 나와 주시죠. 과장님, 질의드릴게요. 여성의 관광은 여성정책실에서 주관하나요? 어르신들의 관광은 어르신 관련 부서에서 주관하나요?

관광정책과장 김재용 아닙니다.

이윤희 의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건강은 어린이 부서에서, 어린이 관련한 그런 부서에서 주관하나요?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는 의미 아시겠죠?

관광정책과장 김재용 네.

이윤희 의원 장애인 관광은 어디서 주관해요?

관광정책과장 김재용 하여튼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윤희 의원 장애인의 특성에 관한 부분은 장애인부서를 통해서 들으셔야죠. 자문을 구하시고 얘기

를 들으셔야 되겠지만 우리 서울시 관광은 장애인 관광을 못하게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셔야죠. 그렇게 하실 계획이시죠?

이윤희 의원 네.

관광정책과장 김재용 칸막이행정, 서로 핑퐁 치는 행정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사실은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그날.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윤희 의원 아닙니다. 장애인 관광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관광지나 호텔이나 음식점 이런 데에 장애인한테 편의한 기능개선은 복지본부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그게 토대가 갖춰지면 저희들은 관광코스를 만들거나 관광상품을 만들어서 홍보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 관광해서 종합적인 기능을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명확하게 부서 지정이 안 되었다는 건데 저희들이 충분히 잘못을 인정하고 지금 기획담당관에서 주관부서를 정하기 위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 정리를 해서 그런 지적되는 것이 다시는 없도록 잘 조정을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과장님. 청년특위 지난번에 했을 때도 각 부서 간에 네트워크나 소통들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청년의 문제, 우리가 청년수당 얘기하고 있고 청년일자리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단순히 청년정책담당관에서 하고 일자리정책담당관에서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지금 성인지예산서는 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모든 예산, 내년도 한 해 연도 예산을 잡을 때 성인지예산사업 각 부서별로 제출하시죠? 사실은 모든 사업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나마 여성에 관한 것은 성인지예산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으니까 억지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부서에, 만약에 우리의 중점사업이 일자리사업이라고 했을 때는 모든 부서에 다양한 일자리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지난번에 청년 푸드트럭 이야기도 얘기했었고 그런 다양한 부서들과의 네트워크 속에서 청년에 대한 배려들이 어떻게 되어야 되고 배려라고 말하면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청년들을 주제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 것이며, 여성을 주제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 수 것이며, 장애인을 주제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 것이며 이런 것들에 대한 일정한 의식적인 포지션을 가지고 가져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맺어준 인연

정리 **함술이**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연구원

지난 3월 29일 서울특별시 중구길벗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창립 10주년 기념식과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날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안소울씨와 활동보조인 김연아씨가 함께 상을 받아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두 분이 어떤 사이인지, 또 그동안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궁금해서 인터뷰를 신청했습니다.



안소울님과 김연아님이 다정하게 포즈를 취하고 있다.

Q 길벗장애인자립생활센터 창립 10주년 기념식에서 두 분이 나란히 상을 받으셨는데, 기분은 어떠셨나요?

안소울 | 이용자와 활동보조인이 같이 상 받기는 진짜 힘든 거예요. 우리는 10년 동안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 더욱 뜻 깊어요. 한명이 받는 것보다 둘이 다 받아 너무 좋아요.

김연아 | 너무 행복하고 보람 있는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Q 두 분은 언제, 어떻게 만나셨나요?

안소울 | 제가 중구길벗센터에 활동가로 있을 때 활동보조 선생님이 근로지원으로 와서 그때 처음 만났어요. 한 10년 쯤 됐어요.

Q 두 분이서 같이 지내는 동안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어려움이 있을 때 극복 방법은 무엇이었나요?

김연아 | 서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을 때 마음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Q 이용자 분께서는 한 달에 몇 시간정도 서비스를 이용하시나요? 아울러, 활동보조인은 몇 분이신가요?

안소울 | 전 자립을 해서 살기 때문에 24시간 정도 받을 시간이 되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활동보조는 3명이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에서 아침까지, 금요일부터 월요일 아침까지……. 이렇게요. 좀 많죠.

Q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이용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안소울 | 서비스를 원래부터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서비스를 받기 전부터 투쟁을 했기 때문이죠. 투쟁은 제도가 처음 시작되기 전부터였어요. 이 제도를 따내기 위해 서울시나 구청, 보건복지부에 가서 다른 당사자분들과 집회를 했어요.

Q 투쟁으로 제도를 따낸 후,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생각했던 제도와 달랐던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안소울 | 저희 당사자들이 처음 원했던 것은 중개기관을 안 끼고 사회복지사를 직접 채용하는 것이었어요. 이미 일본의 경우 그렇게 시행하고 있죠. 중개기관을 안 끼고



안소을 이용자가 웃으며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다.

직접 채용을 하게 되면 지인분이나 옆에서 아시는 분들을 통해 채용을 하는 거예요. 매칭 기다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준비하는 서류도 적어지고 믿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Q 활동보조인 분의 업무 범위와 종류는 무엇인가요?

안소을 | 전부 다요. 제가 못하는 것들을 다 해주세요. 가사지원, 이동보조, 업무지원, 신변처리 등 안 해주는 게 없어요. 제 몸과도 같아요.

Q 두 분이서 오랫동안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이용하시게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안소을 | 저와 활동보조는 대화를 많이 해요. 불편한 게 있으면 바로바로 얘기를 해서 해결을 해요. 싫은 것도 좋은 것도……. 대화가 없었다면 이렇게 오래 같이 활동할 수 없었을 거예요. 대화를 많이 해서 인지 우린 불편한 게 없이 생활하고 있어요.

Q 두 분이서 같이 지내는 동안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어려움이 있을 때 극복 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안소을 | 남이 만나서 하는 건데 없을 리가 있겠어요. 가족들이 해도 불편한 게 있는데…….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아 다툼 적이 있지만, 금방 풀긴 했어요.

Q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문제점들이 서로의 관계를 힘들게 만든 적이 있나요?

안소을 | 서로의 관계를 힘들게 했던 적은 없고요. 이런 적은 있었어요. 서울시에서 전화가 와서 “활보와 이용자가 같이 있느냐? 바뀌라, 왜 옆에 없냐? 어디 갔냐?” 이런 쓸데없는 말을 하길래 서울시에 찾아간 적은 있었어요.

또 작년 11월쯤은, 밤 1시 넘어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집 앞 대문입니다. 문을 열어주세요.”

“제가 지금 집이 아니에요.”

“그럼 활동보조인 좀 바꿔주세요.”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왜 밖에 나가계시죠?”

“네? 장애인은 다 집에만 있어야 하나요? 왜 그러세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활동보조인에게 서울시에 찾아가자고 했어요.

시청 직원과 대화를 했어요.

“밤에 갑자기 찾아와서 다짜고짜 문을 열라고 하는데, 장애인들은 인간도 아닌가요? 친구들을 만날 수도 있고 볼일도 있는데, 왜 그러시는 건가요?”

“우리는 그것이 해야 할 일입니다. 장애인들이 카드만 찍고 활동보조인을 안 들이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청에 근무하는 계장을 다시 찾아갔어요.

계장 역시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했다.” 라며 같은 입장이었어요. 그러고는 “서울시에서 야간에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이용하는 이용자 100명에게 직접 다 찾아갔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도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며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 날 이후로 전화는 잘 안 오는 편이에요. 그냥 있으면 바뀌는 게 없잖아요.

김연아 | 서로의 관계를 힘들게 만든 적은 없지만, 제도의 문제점으로 제 마음이 불편했던 적은 있습니다. 이용자 시간이 부족할 때와 독거 이용자 혼자 두고 집에 갈 때인데, 이용자가 혼자 있을 때 사고를 피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용자 시간에 대해 많이 부족하고 개선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Q 이용자 분과 활동보조인 분의 관계가 친밀해지면, 업무관계에 어떠한 긍정적 효과나 부정적 작용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울러 이상적인 관계유지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안소울 | 관계가 친밀해지면, 업무관계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으니까 말을 안 해도 알아서 척척 해주기 때문에 엄청 편해요. 앞에서 얘기 했지만 대화를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저희처럼 오래 함께 할 수 있어요.

김연아 | 이용자가 원하는 일들을 분명히 인지하고, 해야 할 일들과 하지 말아야 하는 일들을 잘 알고 서로 협조하여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업무관계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부정수급(공단에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이용자와 활동보조인의 동행 확인) 확인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소울 | 당연이 싫죠. 내가 혼자 할 수 있고 혼자 생활 할 수 있다면 활보가 필요 없잖아요.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혼자 할 수 있다면 굳이 부를 필요가 없

으니까요.

한 번은 제가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는 도중 복지부에서 전화가 왔어요.

“제가 지금 수업중이라서 활보는 밖에 있습니다.”

“그래도 바꿔주세요.”

상황을 설명해도 믿지도 않고, 말투 자체도 기분이 나빠요. 공손하지 못하고 취조 받는 느낌이에요. 이러한 전화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오지만, 사람에 따라 자주 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시로 오는 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만약 전화를 못 받으면 복지부가 다시 센터로 전화해서 “왜 이용자와 활보가 같이 없는지, 관리감독을 똑바로 하세요.”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다른 활동 보조인의 경우, 죄인처럼 전화 받는 것 때문에 일하기 싫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더구나 젊은 사람들은 나이 있는 사람에 비해 이런 전화를 되게 기분 나빠해요.

김연아 | 장애인이 부정의 온상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공단의 업무 중 확인 방법도 기분이 나쁘고, 일을 그만두고 싶은 마음까지 생깁니다. 왜냐하면 같이 있는 사람도 항상 긴장 상태인데, 갑자기 전화라도 오면 순간적인 압박감이 들기 때문입니다. 활동보조인을 하는 것은 생각으로도 즐겁지만, 공단의 부정수급에 대한 시선은 부담스럽고 너무너무 불쾌합니다.

Q 보험공단이나 중개기관에 요구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안소울 | 제발 장애인들을 믿어 주세요. 부정수급은 하지도 할 수도 없어요.

Q 한 달에 한 번 공단에서 수신하는 문자메시지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안소울 | 여전히 불쾌해요. 하지만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부정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Q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개선방안은 무엇인가요?

안소울 | 바우처 카드가 활보만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것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여행을 한다거나, 공연을 본다거나 할 때 바우처 카드로 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일본은 바우처카드로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김연아 | 일을 하다 결제시간을 지날 때가 많이 있는데, 결제를 해야 할 8시간이 지나면 왜 늦었는지에 대한 사유서도 작성해야합니다. 이 부분은 개선할 필요성이 있

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개기관에 제출할 서류가 너무 많습니다.

Q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본인 삶에 어떠한 변화와 영향을 주었나요?

안소울 | 만약 지금도 활동보조서비스가 없었다면 가족들과 같이 살았겠죠. 감옥 아닌 감옥 생활을 했을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맘대로 하지 못하고 가족들의 보호아래 매일 같은 날이었겠죠.



김연아 활동보조인이 수줍게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다.

김연아 |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이 제도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활동보조는 저에게는 하나의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활동보조인이 되고 나서, 장애인을 보고 느끼는 나의 마음과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장애인들을 보는 인식이 변했고 생각자체도 변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이 제도에 대한 얘기를 자주 하니 장애인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손주도 장애인분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거리낌 없이 지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를 통해 저도 변하고 가족도 변했습니다. 내 스스로도 많이 바뀌었고 지금은 너무 행복합니다.

Q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통해 보람을 느꼈던 경험이 있나요?

김연아 | 집에만 있었던 재가 장애인이 집 밖에 나와 활동지원제도를 통해 사회생활을 할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Q 서로에게 서로는 어떤 의미인가요?

안소울 | 나에게 활보란? 나와 삶이다.

김연아 | 서로 오래 같이 생활하는 친구와 같은 사람입니다.

Q 끝으로, 개인적으로 꼭 하고 싶은 말씀을 자유롭게 해주세요.

안소울 | 이용자의 이용시간은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한 뒤, 병원 진단서를 보험공단에 제출을 하면 등급에 따라 시간을 판단해요. 그런데 이 때, 비디오를 보여주며 이 행동 저 행동 해보라고 강요를 하는 부분이 많아요. 억지로 해보라고 하고 어떻게든

하게끔 유도해요. 하지만 되게 불쾌해요. 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그걸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요즘은 복지부에서 등급을 높게 매겨요. 활동보조 시간을 덜 주려고요. 예산이 없어서 장애등급을 깎아버리기도 한다더라고요. 게다가 3년마다 재판정을 받아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도 이해가 안돼요. 예를 들어, 뇌병변이 더 좋아지거나 더 나아지지 않거든요. 다만 더 나빠지거나 덜 나빠지거나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똑같은 장애인인데 재판정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장애인은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지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장애는 나이를 먹으면서 더 심해지게 되어있어요. 저 역시 점점 더 팻팻해지는 걸 느끼거든요.

마지막으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은 장애인에 대해서 다양한 공약을 내세우지만, 막상 당선이 되면 없어지는 공약이 많고 실행되지 않은 공약이 많은 것 같아요. 말을 했으면 그대로 지키고 책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김연아 | 정책을 다루는 분들께 말하고 싶습니다. 국회의원이 직접 현장에 가서 현실을 보고 장애인에게 맞는 정책을 짜길 바랍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장애인 당사자가 있는 곳에 와서 생활하는 것도 살펴봤으면 합니다. 제발 수박 겉핥기 식으로 한 번 보고 결정하지 말아주세요. 탁상공론 하면서 겉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직접 와서 하루라도 따라다녀 보세요. 시간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를 봐야 쓸데없이 요구하는 것들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테니까요. 부디 현장에 와서 현실을 판단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활동보조인들은 마인드를 달리 해야 합니다. 이 일을 보람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단지 ‘장애인을 도와줘서 돈이나 벌어야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면 절대 이 일을 하지 마세요. 장애인이 돈으로 보이는 순간 당장 그만둬야합니다. 이용자를 뒤에서 돕고 보호를 해준다고 생각하며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하루 세 끼 밥을 같이 먹는 것보다 직접 사회생활을 해보면서 많은 대화를 하면서 지내야 서로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는 제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이 일을 하고 싶고, 이 제도가 앞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장애인에 대한 우리 모두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알지 못해서 이용에 불편을 겪는다고 합니다. 이용자와 활동보조인이 느끼는 문제점은 아직도 허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이 제도를 보다 많은 중증장애인이 활용하길 기대합니다. 많은 사람이 제도의 문제점과 부족함에 한 목소리를 낼 때, 이 제도는 더 높은 수준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모든 중증장애인의 활발한 사회 참여를 지지합니다.

2017년 장애인 예산의 허와 실

글 **현근식**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정책실장

2017년 대한민국 정부 지출 예산은 400조 7000억에 달한다. 그 중 복지 분야 예산은 약 130조로 총 지출의 32.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복지 재정 증가율 5.3%(약 6조 6000억)가 총지출 증가율 3.7%보다 높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세세하게 따져보면 올해 복지예산은 사회보험 재정의 자연 증가분이 늘어났을 뿐, 오히려 일반예산으로 해결해야 할 복지 분야 사업들을 통제하고 축소하는 편성이다. 특히, 정부는 보건복지부 예산을 전년 대비 3.3%p 증가한 57조 6628억으로 편성했다고 홍보한다. 하지만 국민연금 기금 등 사회보험 재정 지출이 6.4%p 증가한 반면, 복지부의 일반예산은 고작 1.2%p 증가하는데 그쳤다. 그 또한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급여 등의 자연 증가분이 반영되었을 뿐이어서 실제로는 동결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올해 보건복지부는 맞춤형 복지 강화와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지원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약 3조 6191억이고, 기초연금 수급자가 498만 명으로 증가해 기초연금 예산이 약 8조 961억 편성되었다. 여기서도 보듯이, 예산의 자연증가분이 반영되었을 뿐, 그밖에 이렇다 할 새로운 복지정책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장애인 예산, 동결 또는 축소 기조

특히, 장애인 예산에서 동결 또는 축소 기조가 더욱 뚜렷이 나타난다. 장애인정책국의 2017년 예산은 약 1조 9949억으로 전년 대비 약 4%p 증가하는데 그쳤다.

〈표〉 2017년 보건복지부 주요 장애인 사업 예산

(단위 : 억 원, %)

구분	2017예산
장애인의료비	276
장애수당(기초, 차상위)	1327
장애등급심사제도운영	311
장애인연금	5600
장애인보조기구지원	33
장애인활동지원	5461
장애아동가족지원	739
발달장애인지원	91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294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	4551
한국장애인개발원지원	66
장애인단체지원	71
장애인일자리지원	813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50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182
재활병원 건립(국민건강증진기금)	40

대표적인 소득보장 정책인 장애인연금과 장애인수당 예산을 살펴보자. 올해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수당 수급자 수가 각각 약 9,000명과 약 29,000명 늘어 예산액도 각각 약 5,600억, 1327억으로 약간씩 늘었다. 그러나 장애인연金的 기본급여액 단가는 205,200원에서 200원 인상되어 그야말로 중증 장애인의 생계보장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장애인연금은 중증 장애인 중 하위 소득 70%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제도인데, 여전히 연금액이 적다. 장애인으로서 절대

빈곤층에 속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다 해도 장애인으로서 인간답게 살아가는 데는 많이 부족한 금액이다. 장애인연금과 장애인수당이 중증 장애인의 소득보장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사회서비스에 속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역시 효과적인 돌봄 서비스로 자리 잡기에는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 정부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를 61,000명에서 65,000명으로 늘려 452억 원 증액된 5461억 원을 예산으로 편성했다. 이에 대해 장애인 사회는 숫자상으로는 증액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동결 내지 삭감되었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장애인들의 끈질긴 요구로 2007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중증 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인력을 파견하여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많은 중

중 장애인들이 이를 통해 자립생활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또 활동지원인력들은 사회서비스 돌봄노동자로서 고용기회를 얻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2016년 현재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는 61,000명, 지원인력은 54,000명, 제공기관 920여 곳에 달한다.

그런데 문제는 활동지원 바우처 수가가 9,000원으로 비현실적인데, 이번에도 기획재정부에서 수가를 동결시켰다가 장애인들의 압력에 밀려 국회가 나서 9,240원으로 인상하였다. 시간당 9,240원으로 활동지원인력의 급여, 수당, 퇴직금분 아니라 중계기관이 부담할 4대 보험 사업자 부담분과 운영비까지 모두 해결해야 한다. 이 때문에 활동지원 현장에서는 최저 임금보다 적게 지급한다든지,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못한다든지, 활동지원인력과 중계기관이 갈등을 일으킨다든지, 활동지원인력과 이용자인 장애인을 2, 3개 중계기관으로 나눠서 서비스를 하는 등 활동지원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는 활동지원인력과 장애인 모두에게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수가를 약 10%p(시간당 9,900원) 인상을 요구하였지만, 기획재정부가 국가재정전략에 따라 일률적으로 복지예산을 통제하면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없었다.

장애인 의료비 예산은 약 10%(약 24억 원) 감액된 216억이다. 명목상 지원 인원은 85,320명으로 지난해보다 늘었지만 지원 단가가 줄어 예산이 큰 폭으로 줄었다. 특히, 2017년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해임에도 장애인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등 당사자의 요구가 높은 정책에 예산 편성을 충분히 하지 않고 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도 전년 대비 약 32억 줄어 677억으로 편성되었다가 국회에서 813억으로 증액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형 일자리였던 주민센터 행정도우미 장애인 약 1,500명을 시간제 일자리로 전환해 예산을 절감하려고 했다. 이는 그나마 장애인 일자리 사업 중 중증 장애인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일정한 업무능력을 배양할 기회를 주는 행정도우미 일자리를 더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내모는 계획이다. 장애인에게 고용을 통한 최선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분을 무색케 하는 대목이다. 이 같은 조치는 장애인들이 일반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게 직무훈련 기회를 제공한다는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직무훈련을 통해 임금이 적더라도 일반 노동시장의 노동 강도 및 조건에 맞춰 장애인의 업무능력을 향상시켜야함에도, 장애인 일자리를 또 다시 시간제 노동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이럴 경우 다행히 다른 직장을 구하더라도 보조인력 등으로 배치될 공산이 크다. 다행히 국회에서 장애인 일자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일반형 일자리의 수를 늘려서 그나마 장애인 고용의 숨통을 틔게 만들었다.

결국, 장애인 당사자의 요구가 높은 소득보장, 사회서비스, 건강권, 일자리 사업에서 2017년도 예산이 동결 내지 축소되었다. 복지예산에 불어 닳친 재정 관리 및 통제의 칼날이 장애인 예산에도 그대로 적용된 것이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어디로 갔나?

애초 박근혜 정부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탈시설-자립생활지원 정책 기조를 지녀 왔다. 그런데도 올 예산안에서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은 181억이 증액된 4,551억 원이다. 시설 입소 인원을 24,766명에서 25,136명으로 늘리고, 지원 단가도 인상한 것이 예산이 증액된 이유다.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인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 단가를 높이는 것은 이해되지만, 정책의 중심 기조가 탈시설-자립생활 지원으로 바뀐 마당에 시설 거주 장애인의 수를 늘리는 것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자립생활 패러다임에 역행하는 처사다. 한 명이라도 시설에서 나와 지역에서 자립생활 할 수 있게 만들고, 신규로 시설에 유입되는 장애인의 수를 최소화하려는 정부 정책이 아쉽다.

반면, 장애아동 가족지원 예산은 약 4,000만이 감소한 739억으로 편성되어 오히려 축소되었다. 발달장애아동을 위한 재활 서비스 지원과 언어발달 치료 바우처 예산이 동결되고, 장애아동 가족의 양육 돌보미 사업도 감액되어 약 82억이 편성되었다. 장애아동을 부양하는 가정에 대한 양육 및 육아 지원은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다. 이런 정책을 장기적 비전 없이 수행한다면, 결국 양육 부담을 견디지 못한 가족들이 어쩔 수 없이 자녀를 거주 시설로 보내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현재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와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 또한 전년 대비 약 4%(4억) 감액되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 시행되면서 공공후견,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은 지원이 많이 부족한 형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예산까지 축소된 것은 아쉬움이 많다. 정부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정책 개발과 적절한 지원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발달장애인도 같은 사회에서 이웃으로 함께 살아가야 할 시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끝으로,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장애인권리옹호기관)가 2017년부터 지역까지 설치되어야 해서 그 운영 지원 예산이 약 20억으로 증액되었다. 그나마 장애인 인권 침해 예방이나 차별 해소를 위한 의미 있는 예산 편성이라고 할 수 있다.

제자리걸음만 반복하는 한국의 장애인 예산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장애인 예산이 가장 적은 나라 중 하나이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장애인 예산의 확충에 관심이 없어 보였다. 지난 5~6년간 장애인 사회는 OECD 회원국 평균의 1/4에 불과한 장애인 예산을 대폭 늘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심지어 우리나라 장애인 예산 편성은 통제와 통폐합이라는 역행의 기초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장애인 사회는 뜻을 모아 획기적인 제도 변화를 정부에 제안하는 것이 장애인의 삶의 질 변화와 정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첫째, 장애인지예산제도를 도입하자. 장애인지예산은 성인지예산처럼 예산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자원이 양쪽에 평등하게 분배되도록 예산 배분 구조와 규칙을 수립하는 제도이다. 즉, 정부의 정책 도구인 일반 정책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비장애인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반영하는 배분 규칙을 적용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대부분의 장애인 예산은 전체 국민에게 적용되는 일반 예산에 포함될 것이다.

둘째, 현재 5년마다 설계하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더 장기적으로 전환하여 장애인 정책의 근간을 다시 만들어 보자. 현재도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새롭게 수립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장애 당사자의 요구나 사회적 기대에 따라 일회성 정책에 머물러 장애인들의 삶을 디자인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할 수 있다. 이보다는 10년, 20년을 목표로 하는 장애인 정책 장기계획을 세우고 정부마다 세부 정책 계획을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시급한 장애인 복지는 특정 예산으로 지원하자. 예를 들어,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매우 시급히 해결해야하므로, 특별예산이나 기금 등을 조성하여 단기 지원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그 이후는 보편적인 장애인지예산제도를 적용한다면 장애인으로서의 차별과 인권 침해에서 차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매번 정부의 장애인 복지예산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겁다. 앞으로도 정부가 통제 중심의 복지예산제도를 고집한다면 장애인들이 국가 정책을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세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구현"이라는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이미 달성이 어려워졌다. 조만간 들어설 새 정부의 장애인 정책 계획은 얼마나 장애인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 궁금하다. 말만 번지르르한 홍보용 정책으로는 장애인들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장애학생 차별하는 '장학숙' 자치법규의 개선과제

글 정수미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연구원

지난 3월 12일 KBS 2TV '다큐멘터리 3일'이 전라북도 서울장학숙을 소개한 후로 '장학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장학숙'은 지방자치단체가 서울 등 대도시 소재 대학에 진학한 지역 학생들의 학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숙시설이다. 자치단체에 따라 '장학숙' 대신 '장학관', '향토학사', '향토생활관', '영재관'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이하 '장학숙')



서울시 서초구 소재 전라북도 장학숙 전경. <출처: 전라북도 장학숙 홈페이지>

방송을 보면, 전라북도 서울장학숙은 월15만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학생들에게 숙식을 제공한다. 그러다 보니 입사 경쟁률이 높아 학부모들 사이에서 ‘행운의 로또’라 불릴 정도로 인기가 많다. 그러나 장애학생은 장학숙 입사자격조차 얻지 못할 처지다. 「전라북도 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가 “신체 및 정신상의 사유로 공동생활에 부적합한 사람”의 입사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라북도 서울장학숙에 확인한 결과 현재 장애학생은 단 한 명도 없다.

전라북도 장학숙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2017년 3월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에서 실시한 <전국 장학숙 등에 관한 조례, 규칙, 규정 준수조사> 결과, 관련 자치법규를 제정한 자치단체 43곳 중 23곳(53.49%)에서 장애학생의 입사를 제한하거나 퇴사 조치하는 장애차별적 조항이 확인되었다.

〈표1〉 장학숙 관련 장애차별적 조항 목록

지역	조례명	관련 조항
인천 강화	장학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4조(입사생의 자격제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학관에 입사할 수 없다. 2. 신체 및 정신상의 사유로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하여 공동생활에 부적합한사람
경기 가평	향토학사입사생선발조례	제5조(자격 제한)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사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공동생활을 영위하는데 부적합한 사람
경기 연천	장학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4조(입사생의 자격제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학관에 입사할 수 없다. 2. 신체 및 정신상의 사유로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하여 공동생활에 부적합한 사람
경기 화성	장학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6조(퇴사)입사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퇴사 조치할 수 있다. 5. 신체 및 정신상의 사유 등 기타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강원 평창	향토학사입사생선발에관한조례	제5조(자격제한)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입사를 제한 할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사유로 공동생활이 어려운 학생
강원 양양	향토학사및국제생활관입사생선발에관한조례	제5조(자격제한)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입사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사유로 공동생활이 어려운 학생

강원 양구	향토학사입사생 선발조례	제5조(자격제한)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입사자격을 제한할 수 다. 1. 신체·정신상의 사유로 공동생활이 어려운 학생
강원 철원	학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4조(입사생의 자격제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사에 입사할 수 없다. 2. 신체 및 정신상의 사유로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하여 공동생활에 부적합한 사람
충북 제천	학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5조(입사생 자격 및 제한)③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사에 입사할 수 없다. 2. 신체 및 정신상의 사유로 공동생활에 부적합한 자
충남 태안	대학생기숙사설치및운영조례	제8조(입사제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생은 학사에 입사할 수 없다. 1. 신체 및 정신상의 사유로 공동생활에 부적합한 대학생
전북 본청	장학숙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5조(입사자격 제한)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학숙에 입사할 수 없다. 2. 신체 및 정신상의 사유로 공동생활에 부적합한 사람
전북 정읍	장학숙운영조례시행규칙	제6조(입사제한)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장학숙에 입사할 수 없다. 2. 신체 및 정신상의 사유로 공동생활에 부적합한 학생
전북 진안	장학숙입사생선발기준에관한규칙	제4조(입사자격 제한)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장학숙에 입사할 수 없다. 2. 신체 및 정신상의 사유 등으로 공동생활에 부적합한 자
	장학숙운영규정	제7조(퇴사)①재사생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퇴사 처분한다. 3. 신체 및 정신상의 사유로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전북 전주	풍남학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6조(입사제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사에 입사할 수 없다. 2. 신체 및 정신상의 사유로 공동생활에 부적합한 자
전남 나주	학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입사생의 선발)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사에 입사할 수 없다. 2.정신상의 사유로 공동생활에 부적합한 학생.
	학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0조(퇴사)시장은 입사생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퇴사 조치할 수 있다. 3.정신상의 사유로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전남 여수	학숙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9조(퇴사)시장은 입사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사 조치할 수 있다. 3.신체 및 정신적인 사유로 공동생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전남 강진	학사설치및운영 에관한조례시행 규칙	제9조(퇴사)군수는 입사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퇴사 처분한다. 4.건강 및 정신상의 사유로 공동생활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전남 구례	학사운영규정	제9조(입사자격 제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사에 입사할 수 없다. 2.신체 및 정신상의 사유 등으로 공동생활에 부적합한 자
경북 영천	학사설치및운영 조례	제5조(입사생의 자격 및 제한)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사에 입사할 수 없다. 2.신체 및 정신상의 사유로 공동생활에 부적합한 자
	학사설치및운영 조례시행규칙	제10조(퇴사)시장은 입사생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퇴사조치 할 수 있다. 3.신체 및 정신상의 사유로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경북 청송	향토생활관입사 생선발규정	제6조(입사자격 제한)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향토생활관에 입사할 수 없다. 3.신체 및 정신상의 사유로 공동생활에 부적합한 자
경북 포항	향토생활관입사 생선발규정	제6조(입사자격 제한)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향토생활관에 입사할 수 없다 3.신체 및 정신상의 사유로 공동생활에 부적합한 자
경남 산청	우정학사설치및 운영에관한조례 시행규칙	제11조(퇴교)①관장은 수강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퇴교 처분할 수 있다. 3.신체 및 정신상의 사유로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경남 합천	남명학습관설치 및운영규칙	제14조(퇴관처분)①관장은 수강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퇴관 처분할 수 있다. 3.신체 및 정신상의 사유 등으로 공동생활에 부적합한 사람

〈표1〉을 자치단체별로 보면, 인천 1곳(강화군), 경기 3곳(가평군, 연천군, 화성시), 강원 4곳(평창군, 양양군, 양구군, 철원군), 충북 2곳(제천시, 태안군), 전북 4곳(본청, 정읍시, 진안군, 전주시), 전남 4곳(나주시, 여수시, 강진군, 구례군), 경북 3곳(영천시, 청송군, 포항시), 경남 2곳(산청군, 합천군)의 자치법규에 이런 조항들이 있다. 하지만 관련 자치법규 없이 운영되는 ‘장학숙’도 상당수 있어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것보다 사정이 더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장학숙’ 입사제한 또는 퇴사 사유 중 장애인 차별이 의심되는 조항은 ①신체 및 정신상의 사유로 공동생활에 부적합한 경우 ②정신상의 사유로 공동생활이 부적합한 경우 ③질병 등의 사유로 공동생활을 영위하는데 부적합한 경우 등 세 가지 유형이다.

이 중 ①과 ②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되는 조항이어서 삭제할 필요가 있다. 신체 상 사유로 입사를 제한하는 것은 당연히 차별에 해당되고, 정신상의 문제는 입사 제한 사유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퇴사 사유로 논의되어야 한다.

〈표2〉 장애차별 조항 개선사례

I. 장애차별 조항 삭제

「제주특별자치도 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개 정 전	개 정 후
제3조(입주학생 자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재관에 입주할 수 없다.	제3조(입주학생 자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재관에 입주할 수 없다. <개정 2014.1.3.>
2. 신체 및 정신상의 사유로 공동생활에 부적합한 자	2. 삭제 <2011.12.7.>

【제정·개정이유】 ○ 장애인 차별조항을 폐지함.

「태백시 향토학사 입학생 선발에 관한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개 정 전	개 정 후
제5조(자격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입사를 제한 할 수 있다.	제5조(자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사를 제한 할 수 있다. <개정.2014.10.10.>
1. 신체·정신상의 사유로 공동생활이 어려울 때	1. <삭제 2013.3.15.>

【제정·개정이유】 국가법령정보센터 내 미확인됨.

II. 좋은 조례 예시

「정선군 향토학사 입학생 선발 조례」

제5조(자격제한)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입사자격을 제한한다.

1. 공동생활이 어려운 자
2.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이런 문제 때문에 일부 자치단체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차별 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표2>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입주학생 자격제한)의 2 “신체 및 정신상의 사유로 공동생활에 부적합한 자” 조항과 「태백시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 제5조(자격제한)의 1 “신체·정신상의 사유로 공동생활이 어려울 때” 조항이 2011년과 2013년에 각각 삭제되었다.

「가평군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 조례」에만 있는 ③의 경우 “질병”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오해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 참고로 강원도 정선군과 속초시의 향토학사 조례는 “전염성” 또는 “감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만 입사를 제한하여 장애인 차별 소지를 없었다.

우리나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제8조)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관리자는 당해 토지 및 건물의 매매, 임대, 입주, 사용 등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 분리,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6조). 그럼에도 상당수 자치단체들이 장학숙을 운영하면서 장애학생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들을 배제하고 있다면, 장애인 차별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이와 반대로 <표3>을 보면, 초중등학교와 대학교의 기숙사 입사 규정들은 장애학생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한다. 가령, <표4의> 교육부의 「대학교 생활관 관생 선발 지침(예시)」은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장애인을 생활관생으로 우선 선발하도록 권고한다. 또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의 중등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장애학생 포함)를 우선 선발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표3〉 기숙사 입소 장애학생 우선선발 조항

조례명	관련 조항
대구광역시 급학교기숙 사설치및운 영에관한조 례	제9조(학생선발)기숙사 운영 학교는 학생 선발 기준을 정하여 학생을 선발하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 다만, 우선선발 대상 학생의 기숙사 입사 희망자가 선발비율에 미달하거나 우선선발 대상 학생이 기숙사 운영 목적에 현저히 부적합한 학생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사회적 배려 대상자(장애학생포함):정원의 10% 2.원거리 통학자:정원의 5%
광주광역시 각급학교기 숙사설치및 운영조례	제6조(학생선발) 기숙사 운영 학교는 학생 선발 기준을 정하여 학생을 선발하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 다만, 우선선발 대상 학생의 기숙사 입사 희망자가 선발비율에 미달하거나 우선선발 대상 학생이 기숙사 운영 목적에 현저히 부적합한 학생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사회적 배려 대상자:정원의 10% 2.원거리 통학자:정원의 100분의5

〈표4〉 교육부 대학생 생활관 관생 선발 지침(예시)

제6조(선발기준) ① 관생 선발은 우선선발과 일반선발로 구분하며, 위원회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우선선발 대상을 선발한 후 일반선발을 한다.

② 생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우선 입사 대상으로 선발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제1호에 정하는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및 그 자녀
3. 국가 보훈대상자 본인 및 그 자녀
4. ○○○○

마치며

우리는 다음의 조사를 통해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국내 유학’ 주거를 지원한다는 장학숙의 장애학생 입사제한/퇴사 자치법규 조항을 살펴보았다. 조사를 진행하며 두 가지 의문이 생겼다. 첫째, 정말 장애학생은 공동생활에 부적합한 사람인지? 둘째, 자치법규 제정 당시 그들이 상상하는 지역인재상은 어떤 모습의 학생인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단연코 “아니다”이다. 공동생활의 사전적 의미는 “본능적으로 일정한 시간과 공간에서 여럿이 도우며 사는 생활”이다. 타인과 여럿이 도우며 살고자 하는 선한 본능, 사회성, 상대방을 향한 배려, 예의는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제한되거나 결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 ‘장학숙’ 관련 자치법규를 만든 자들이 상상하는 지역 인재의 모습은 아마도 성적이 우수하고 성실한 학생이었을 것이다. 다만, 그 우수하고 성실한 학생의 모습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손상이 없는 비장애인의 모습으로만 한정되어 있었다는 점은 상당히 유감스럽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장애학생이 “비가시적 존재”, ‘삭제된 존재’로 남아 있는 건 아닐까 싶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애학생의 장학숙 입사제한/퇴사 근거조항은 마땅히 삭제되어야 하고, 오히려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적극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 또한 해당 차별조항의 개선에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장애학생의 장학숙 입사 후에도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는지,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살펴야 할 것이다.

장애 유형에 따른 재난안전 매뉴얼이 필요하다

글 김수동 송실대학교 기업재난관리학과 연구원

과거 우면산 산사태, 최근 발생한 경주인근 지진 등 자연재난과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 최근 세월 호를 포함한 사회적 재난이 증가 하고 있다. 따라서 재난발생시 인명구조에 대한 관심이 고조 되고 여러 방향으로 대응책이 준비, 연구 되고 있다. 국가 재난관리는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통합, 조정 되어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이 작성 되어 있고, 각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위기관리 행동 매뉴얼, 실무 매뉴얼을 작성해서 운영하고 주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매뉴얼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구성 되어 있어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재난안전 취약계층에게 맞는 매뉴얼 구축은 아직 미비한 상태이다. “장애인 복지 법 제24조(안전대책 강구)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락사고 등 장애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와 비상재해 등에 대비하여 시각·청각 장애인과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피난용 통로를 확보하고, 점자·음성·문자 안내판을 설치하며, 긴급 통보체계를 마련하는 등 장애인의 특성을 배려한 안전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표준, 행동, 실무 매뉴얼이 미비하여 실제 위기상황에서의 행동 및 대처가 어려운 상황이다.

여러 기관에서 장애인 위기관리 매뉴얼 등을 만들고는 있지만 장애인 시각이 아닌 비장애인의 시각으로 만들어져 있어 실제 재난 상황에서는 그 매뉴얼의 기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에 지진 해일 화산폭발 등 많은 재난이 일어나는 일본에 대비하여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먼저, 한국의 장애인 정의를 보면 입법 목적에 따라 개별법마다 다르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서는 장애인을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 한다. 또 장애유형 분류는 아래의 표와 같이 대분류는 2가지이고 중분류는 4가지 소분류는 15가지로 분류해 세부적인 항목으로 잘 구분되어져 있다.

〈한국 장애 유형〉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적 장애	외부기관의 장애	①지체장애	절단장애 / 관절장애 / 지체기능장애 / 변형 등의 장애, 척수장애
		②뇌병변장애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③시각장애	시력장애 / 시야결손장애
		④청각장애	청력장애 / 평형기능장애
		⑤언어장애	언어장애 / 음성장애 / 구어장애
		⑥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
	내부기관의 장애	⑦신장장애	투석치료 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⑧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⑨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⑩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 기능 이상
		⑪장루·요루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⑫뇌전증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뇌전증
정신적 장애	발달장애	⑬지적장애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70이하
		⑭자폐성장애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⑮정신장애	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일본의 장애인 정의를 보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제한을 받는 자로 신체의 기관이 어떤 원인(선천적 또는 병이나 부상)으로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고 또한 그 증상을 말한다. 그 장애로 인해 장기간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 자를 장애인으로 부른다. 후천적인 장애란 병이나 부상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로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생활상에 제한을 받는 것으로 정의 하고 있다.

1993년 11월에 개정 된 「장애자기본법」에서는 장애란 “신체장애, 지적장애 또는 정신장애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며 대분류 신체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분류하고 세분류는 아래의 표와 같다.

〈일본 장애 유형〉

대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적 장애	①시각장애	신체기능의 일부에 부자유가 있어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②청각·평형기능장애	
	③음성·언어·저작 기능장애	
	④지체부자유	
	⑤질환에 의한 내부장애	
지적 장애	⑥지적장애	일상생활에 읽기, 쓰기, 계산 등을 할 때 지적 행동에 지장이 있는 상태로 지능지수가 기준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정신적 장애	⑦정신분열증	뇌 및 심장 기능과 기질의 장애에 따라서 일어나는 정신 질환에 따라서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⑧정신과약물 급성중독/의존증	
	⑨정신질환	

일본 장애인 방재 매뉴얼을 보면 재해 시 도움이 필요한 자 대책에 대해서는 국가로는 「재해 시 보호 필요자 피난 지원 가이드라인」이 2006년 3월에 만들어 지자체에 대처를 주지 해왔다. 그러나 2011년의 동일본 대지진에서는 전체의 사망자 수 중 65세 이상 사망자 수는 약 60%이며 장애인의 사망률은 피해주민 전체 사망률의 약 2배에 달했다. 이러한 동일본 대지진의 교훈을 바탕으로 2013년 재해 대책 기본법의 개정에서 피난행동 요지원자 명단을 활용 한 실효성 있는 피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일본은 동일본 대지진 이후 대규모 재해발생 시에는 장애인과 거동이 어려운 고령자의 정보수집이나 자력으로 대피가 곤란하기 때문에 큰 피해를 입거나 희생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2004년 3월에 「재해 시 장애자 지원 대책 매뉴얼」을 만들어 각 지자체가 방재 대책을 실시해 장애자 등이 재해 발생 시에 취해야 하는 행동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있다.

또한 일본은 세 분류 별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실효성을 높여 재난 시에 장애인 본인과 장애인을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지를 행동 매뉴얼로 정해 두어 혼란을 방지 하고 있다. 세부 내용은 평소부터 준비 하는 것과 재해 발생 시에 공통 대응 재해 발생 시에 장애유형 분류별 대응으로 구분하여 재해 발생 전후로 사전 예방, 대비, 대응, 복구에 맞게 재난 계획을 세우고 있다.

우리나라도 비장애인을 상대로 한 매뉴얼은 체계적으로 잘 준비되고 있지만 장애인 등 재

난 취약계층의 준비는 미흡 하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매뉴얼과 일본 도쿠시마의 장애인 방재 매뉴얼 비교 아래 표를 참조한다.

일본은 구체적인 실행 안뿐만 아니라 해당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해 재해로부터 재난 취약자 계층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예방 및 대비가 가이드라인 과 매뉴얼로 존재되어 있어 실제 상황에서 실효성 문제가 대두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에 「사회복지시설 화재 안전교육 표준매뉴얼」을, 또 서울시 소방재난 본부는 2014 년에 「장애인 재난위기 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보급하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는 2011년에 「사회복지시설 화재 안전교육 표준매뉴얼」을 만들어 화재 발생 시 시설 내에 있는 사람들의 피난 절차를 제시 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내용에 불과해 이 매뉴얼을 보고 장애인들이 자력으로 대피하는 것은 역부족이다.

특히, 서울시 소방재난 본부가 2014년에 만든 「장애인 재난위기 관리 매뉴얼」은 전체 장애인 중 51.5%를 차지하고 있는 지체장애인을 중심으로 되어 있어 장애유형별 대피 안을 제시하지 못한다. 더구나 지체장애인들에게도 장애인이 거주하는 공간, 보행 보조기구(휠 체어, 잔동 휠체어)의 유의사항, 비상 소지품 등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도움을 받는 장애인이나 도움을 주는 보호자의 행동 지침도 제시 되어 있지 않다. 또한 명부 정리 등 관리 부문이 많이 미흡하여 현실성 있는 매뉴얼 제작이 필요하다. 매뉴얼에는 재난 발생 시의 지침도 필요하지만 평소부터 예방과 대비를 준비하는 사항이 중요하다.

〈한국과 일본의 장애인 재난 안전 행동 매뉴얼 비교〉

분 류	한 국	일 본
거동이 어려운 고령자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몸을 안전 하게 지키는 방법 • 비상 소지품을 휴대 • 가족, 주변 사람의 도움 방식
시각장애인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몸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 • 안전한 대피 방법 • 돕는 사람들의 유도 방법
청각·언어장애인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의 파악 • 몸을 안전 하게 지키는 방법 • 안전한 대피 방법 • 돕는 사람들의 유도 방법
지체장애인	있음 (표 아래 설명 참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몸을 안전 하게 지키는 방법 • 안전한 대피 방법 • 돕는 사람들의 유도 방법

분류	한 국	일 본
내부장애인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몸을 안전 하게 지키는 방법 • 비상가방 준비 방법 • 안전한 대피 방법 • 지원의 의뢰 준비 • 돕는 사람들의 유도 방법
지적장애인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몸을 안전 하게 지키는 방법 • 비상가방 준비 방법 • 안전한 대피 방법 • 지원의 의뢰 준비
정신장애인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몸을 안전 하게 지키는 방법 • 비상가방 준비 방법 • 안전한 대피 방법 • 지원의 의뢰 준비 • 돕는 사람들의 유도 방법

※ 우리나라 ‘지체장애인’ 재난 안전 행동 매뉴얼 내용

- 소아마비: 재난상황 고지 안전벨 사용, 원활한 이동을 위해 보조기구 및 시설정비
- 근육병: 재난상황 고지 안전벨사용, 효율적 이동을 위한 보호자 활동보조인 동반 필수, 호흡곤란이나 연하장애 방지를 위한 구급준비가방에 약품 및 물품구비
- 뇌성마비: 재난상황 고지 안전벨 사용, 효율적인 이동을 위해 보호자 또는 활동보조인 동반 필수, 경직이나 경련 방지를 위한 구급 가방 준비
- 중하부: 재난상황 고지 안전벨 사용, 효율적인 이동을 위해 보호자 또는 활동보조인 동반 필수, 스스로 이동가능 한 지역에서 원활한 이동을 위해 보조기구 또는 시설장비 이용
- 최상부: 재난상황 고지 안전벨 사용, 효율적인 이동을 위해 보호자 또는 활동보조인 동반 필수, 호흡곤란 방지를 위한 구급준비가방 내 약품 및 물품구비
- 흉수요수: 재난상황 고지 안전벨 사용, 음성안전장치 필수, 준비효율적인 이동을 위해 보호자 또는 활동보조인 동반 필수
- 편마비: 재난상황 고지 안전벨 사용, 음성안전장치 필수, 효율적인 이동을 위해 보호자 또는 활동보조인 동반 필수, 물이나 약물 복용 금물, 의식 없을 때 몸을 흔들거나 얼굴 때리는 것 금지, 바늘로 손끝을 따는 행동 금지

종합하여 보면, 우리나라는 국가 차원에서 많은 것들을 제도화하기 위해 표준매뉴얼, 실무 매뉴얼, 행동 매뉴얼 등을 만들고 있다. 하지만 고령자, 장애인, 아동 등 재난 취약 계층에게는 많이 미흡한 상태이다. 2017년 2월 9일 서울 종로구 낙원동 톰즈호텔 붕괴사고에서도 재난 취약계층인 청각장애인이 2명이 매몰되어 사망했다. 관심과 훈련만 있었다라도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환경과 상황이었다. 위 사례만 보더라도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재난 안전 매뉴얼이나 안전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충분하다.

이에 위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한국과 일본의 재난 안전 행동 매뉴얼의 특징을 상호 비교한 근거에 따라, 재난 취약계층 모두를 포괄하는 재난 안전 행동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장애인 유형별로 거기에 맞는 매뉴얼을 만들어 유형별 대응 방법을 제시하고 독립적 거동이 가능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구분 하여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단계별 행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피난 행동 가이드라인 등을 제정하고 재난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과 훈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난 취약계층에 인지 시켜야 한다.

셋째, 현재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기본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국민안전교육 진흥기본법 제13조 에도 사회 복지시설 등의 안전교육이라 하여 특정한 기관이나 시설에 수용된 장애인들에 관한 규정으로 그적용 범위가 협소하다. 강의 및 강사 프로그램의 개발 또한 장애인과 그 보조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 및 프로그램은 있으나 전문성이 부족하다. 이에 재난 취약계층을 형성하고 있는 장애인과 그 보조인을 위한 재난 안전 매뉴얼과 교육 및 훈련이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가능하면 이 계층을 잘 알고 이해하는 강사들을 양성해야 될 필요성도 제기 한다.

세계 자폐인의 날을 맞이한 각국의 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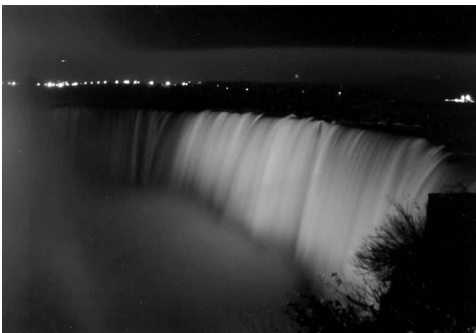
- 자폐인의 “자기결정권”과 “자율성”을 존중하자 -

글 함솔이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연구원

4월 2일은 UN이 정한 ‘세계 자폐인의 날(World Autism Awareness Day)’로 2008년 제정 이후 올해 10회를 맞이하였다. 이 날은 자폐성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자폐증(autism)이란 말은 미국 존스홉킨스의대 의사 레오 캐너가 1943년에 처음 사용했다고 한다. 이 말은 “자기 자신”을 뜻하는 그리스어 "아우토(auto)"에서 유래하였는데, “자기 세계에 고립되는 증상”이란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하지만 자폐증은 이렇게 단순한 증상이 아니다. 전 세계 의사들은 아직도 자폐증의 원인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자폐인 중 약10%는 자폐성 천재 즉 ‘새번트(savant)’이다. 영화 <레이맨>의 실제 주인공 킴 픽이나 동물학박사 템플 그랜딘 같은 자폐성 천재들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외국의 많은 학자들은 자폐증을 의학적 이상 증상이 아니라 ‘신경다양성(neuro-diversity)’의 관점으로 연구하고 있다. 더불어 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들의 권리와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 중 하나가 “파란 빛 밝히기(Light It Up Blue)” 운동이다. 이 운동은 지난 2010년부터 전 세계 지역명소에서는 자폐성 장애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촉구하기 위한 글



캐나다 '나이아가라 폭포'



이집트 '피라미드'



캐나다 '온타리오'



미국 '백악관'

로벌 공익 캠페인이다. 현재 “파란 빛 밝히기”는 142개국 18,600여개 명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행해지는 세계 자폐인의 날을 대표하는 이벤트가 되었다.

한편, 지난 3월 31일 UN은 전 세계 7,000만에 이르는 자폐성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하라고 촉구하였다. UN의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헤스는 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인정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자폐성 장애인은 자신의 의지와 선호에 따라 모든 권리를 요구하고 자기 삶에 관한 결정을 내릴 자격이 있다고 했다. 또 “자기 결정권”과 “자율성”을 위한 평등한 기회를 누릴 때 자폐성 장애인들이 앞으로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UN은 올해 세계 자폐인의 날의 주제를 “자기결정권과 자율성 추구”로 정했다.

이번 호 <이슈포착>은 세계 자폐인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의 반응을 살펴보기로 한다.

□ 한국

- 서울 : 한국자폐인사랑협회와 보건복지부가 4월 2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세계 자폐인의 날을 맞아 ‘4.2 사랑콘서트’를 개최하였다. 광화문광장에서는 자폐성 장애를 대신할 새 이름 공모에 대한 시민 현장투표, 좋은 사이 이벤트 등 자폐성장애에 대한 편견을 허물고 시민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행사가 진행되었다(에이블뉴스).
- 울산 : 학성초등학교는 전교생과 학부모, 교직원이 모두 참여하는 ‘세계 자폐인의 날 파란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파란 풍선으로 사진 찍기, 파란 옷, 파란 학용품 등과 함께 가족인증 사진을 찍어 응원의 메시지와 함께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는 프로그램도 진행하였다(경상일보).

- 제주 : NH농협은행 제주시청출장소 직원 10여명은 4월 2일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제주지부가 주최한 세계 자폐인의 날 홍보봉사에 참여했다. 홍보책자 제작 지원은 물론, 올해는 홍보용 물티슈, 거리홍보물 등 지원을 통해 세계 자폐인의 날을 알리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헤드라인제주).

□ 미국

- 뉴욕 : 사상 처음 백악관도 파란 빛 밝히기 캠페인에 참여하였다(CBS New York).
- 미시간 : 한 재단이 자폐성 장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수용을 높이기 위해 연중행사를 계획하였다. 노비에 위치한 이매진극장에서는 자폐성 장애 어린이와 가족들을 위해 영기 '베이비 보스(Baby Boss)'를 상영하였다(ABC).
- 캘리포니아 : 척이치즈(레스토랑)에서는 세계 자폐인의 날을 맞이하여 게임 행사를 진행하였다. 특히 감각장애가 있는 자폐성 장애인들과 함께 공 게임과 아케이드 게임을 하였다(Knoxville).
- 유타 : 휘티어 초등학교는 자폐증 학생들이 미세 운동능력을 향상하도록 감각활동을 진행하였다. 재미있는 면도크림, 스티커 책 가지고 놀기, 쿵 주머니로 돌려싸인 컵 두드리기 등 재미있는 놀이를 중심으로 행사가 진행하였다(KSL.com).

□ 중국

- 베이징 : CSCLF 재단은 자폐성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해 자폐증 관련 온라인 기사의 독자성에 대한 빅 데이터를 수집했다. 이 재단은 세계 자폐인의 날에 앞서 빅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온라인 뉴스 및 정보 검색 엔진인 토티아오를 활용했다(China.org).
- 난징 : 아미티 재단은 세계 자폐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라디오 방송국 난징메트로와 차이나포스트난징과 함께 “사랑은 좋은 목소리”라는 주제로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자폐성 장애 어린이들이 만든 그림을 배경으로 특별한 엽서를 만들고, 또 지하철역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라디오를 통해 시를 낭송하였다(China Christian Daily).
- 헤이룽장성 : 자폐성 장애 어린이를 위한 자선 경매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 자폐성 장애 어린이와 그 부모들은 손수 만든 수공예품을 선보였다(Global Times).

- 상하이 : 자폐성 장애 어린이의 대인관계 기술을 향상시키고, 사회와 통합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농구팀이 설립되었다(China.org.cn).

□ 유럽

- 영국 런던 : 개트워 공항은 세계 자폐인의 날을 기념하여 자폐성 장애인과 보호자 및 가족에게 항공기 여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 행사에는 30명이 넘는 가족이 개트워 공항이 추진중인 숨겨진장애지원프로그램(Hidden Disability Assistance Program)에 참여하였다. 이 프로그램에는 체크인 방법, 훈련된 보안견과 경찰 만나기, 엑스레이 확인, 직원들의 응급서비스 등이 포함되었다(Mid Sussex Times).
- 이탈리아 피렌체 : 피렌체 주민들은 자폐인의 날을 맞아 무스코비 푸드 & 스포츠가 주관하는 지역사회 인식개선과 자폐인 이해 캠페인에 참석하였다(WBTW NEWS 13).
- 카자흐스탄 : 세계 자폐인의 날을 맞아 케루엔 시티 쇼핑몰에서 자선 행사가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는 뮤지션과 예술가들의 공연과 아트 마스터 클래스, 스크랩북, 이젤에 그림 그리기, 스피로 그래프 그리기, 소금 반죽 모델링, 애니메이터 같은 흥겨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THE ASTANA TIMES).

□ 아시아

- 홍콩 : 홍콩에 있는 비영리 단체는 정부가 자폐성 장애 어린이를 다루는 방법을 재고하고, 정부 보조금 정책을 바꾸어 이 어린이들을 위한 특수한 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South China Morning Post).
- 바레인 : 바레인 국영 항공사 걸프항공은 세계 자폐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자폐 관련 협회나 학회가 개최하는 다양한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무료 항공권을 제공하였다(thepeninsulaqatar). 또 아라비안걸프대학에서는 바레인 교육부와 협력하여 축하행사를 개최하였다. 대학 총장이 긍정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자폐성 장애를 주제로 강의하고 자폐성 장애 프로그램의 성과를 발표하였다(bna.bh).
- 카타르 : 세계 자폐인의 날을 맞아 카타르항공은 하마드 메디컬 코퍼레이션 의료재단과 파트너 관계를 맺고 4월 한 달 동안 전국 항공사 직원들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이 활동은 자폐증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항공사 직원의 이해를 심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또 카타르항공은 의사, 전문가, 치료사가 실시하는 세미나를

지원하고 직원들이 자폐성 장애인을 지원하는 기술을 선보였다. 뿐만 아니라 항공사 소셜미디어에 자폐증 관련 콘텐츠를 게시하고 자폐성 장애인과 승무원의 특별 사진 촬영 행사도 진행하였다(Gulf Times).

이처럼 세계 각국에서 자폐인의 날을 맞아 ‘파란 빛 밝히기’ 캠페인을 비롯하여 특별한 행사와 이벤트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이런 행사들이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자폐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자폐증에 대한 사회인식이 지금보다 훨씬 더 긍정적으로 변해야 하고 자폐인이 다른 시민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에서 자립해서 살 수 있어야 한다.



세계 자폐인의 날 행사. <출처 : UN Photo>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성 모니터링

글 강창일 조례법률모니터단원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다남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예산군, 홍성군, 태안군에 설치되어 있는 투표소를 모니터링하였다. 각 지역에 장애 당사자 두 명으로 구성된 모니터링위원들이 편의시설과 장애 인권 교육을 사전에 받고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투표소)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장애 당사자 모니터단원들은 투표소가 설치된 곳을 직접 방문하여,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 여부, 투표소까지의 접근성, 투표소 주출입구의 휠체어 접근성 여부, 투표소 주출입구 경사로, 장애인 화장실 유무 및 사용가능성 등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조사 결과,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는 홍성군이 62%로 가장 높았는데, 읍 단위에는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 반면 면 단위로 갈수록 주차구역 조차 없는 곳이 많았다. 태안군의 경우는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율이 28%로 가장 낮았다. 장애인 주차장이 언덕 밑에 있어 휠체어 이

용자가 혼자서는 접근하지 못하는 곳도 있었다.



또 화장실 유무 및 사용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예산군을 빼고 홍성군과 태안군 지역에는 장애인 화장실이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설치되어

있어도 남·여 구분이 없거나 문이 잠겨 있거나 청소도구 등이 있어 이용할 수 없는 곳도 있었다.

투표소 접근성의 경우 홍성군과 예산군 지역은 일부 투표소를 제외하고 큰 불편이 없었으나, 태안군 지역은 대부분 비포장 길이고 장애인 주차장조차 없어 많이 불편하였다. 게다가 선거 당일 비가 내려 학교 운동장이 진흙탕으로 변해 휠체어 이용자들이 투표소까지의 접근하는데 애를 먹었다.

끝으로, 투표소 주출입구의 휠체어 접근성을 조사해 보니 10곳을 투표소에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 유권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또 경사로의 경사가 심해서 휠체어 이용자 스스로 투표소에 접근하는 것이 어려운 투표소도 간혹 있었다. 특히, 경사로를 건물 뒤편에 설치해 놓아 장애인들이 돌아서 투표소로 들어가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비장애인들이 투표하고 나오는 출구 쪽으로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어서 서로 부딪치는 불편을 겪었다.

종합하여 보면, 대다수 투표소가 학교나 마을회관에 위치하여 있었는데 내부에 계단이나 턱이 있어서 접근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간이 경사로를 설치해도 경사가 심해서 장애인이 혼자서는 이동할 수 없고 보조인의 도움을 받더라도 낙상 등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대다수 투표소는 휠체어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갖추려고 노력은 하였지만 일부 투표소는 장애인 주차공간이 아예 없거나 주차장이 있어도



이동편의시설이 미비하여 투표소까지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막상 편의시설이 있어도 장애인의 사용 편의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형식적으로 모양만 갖추는데 급급한 곳도 많았다. 또한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에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처음 투표소 모니터링에 참여하면서 혼자 다니기가 힘들 것 같아 중3 딸아이를 데리고 다녔다. 내심 내 아이에게도 좋은 경험이 되리라 생각하였다. 어느 곳은 편의시설이 너무 잘 갖추어져 혼자서도 투표하는데 지장이 없었지만, 장애인 주차장조차 없고 주변 도움 없이는 투표소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곳도 있었다.

투표율을 높이려고 요즘 같은 경우 거소투표나 부재자투표, 그리고 사전투표 등 많은 대책들이 생겨났지만 이러한 방해요소들로 인해 오히려 투표를 하러 왔다가 되돌아가는 기이한 현상이 생겨날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가져본다. 투표소 접근성이 예전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많은 허점이 드러나 있어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소를 선정하기 전에 중증장애 당사자와 함께 미리 점검하고 의견을 반영해야 할 것 같다.

선진국들은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은 국무부 홈페이지에 후보자와 투표 안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에게 음성파일로도 정보를 제공하고 청각장애인에게는 후보 연설이나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막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체장애인은 각 주가 정한 법률에 따라 부재자투표, 사전투표, 우편투표 등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한다. 또 투표소가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해당 유권자는 주 정부에 투표소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호주는 시각장애인 유권자에게 오디오 CD, 점자, 인터넷 문서, 큰 문자로 만들어진 파일, MP3 음성파일을 통해 선거 정보를 제공한다고 한다. 또 청각장애 유권자는 국립 릴레이 서비스(National Relay Service)를 이용해 선거정보를 얻는다. 특히, 지적장애인은 투표 보조

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쉬운 영어로 된 선거 안내 가이드도 제공받는다.

이웃 일본의 경우 장애인을 위한 투표소 접근성에 관한 법률적 규제는 아직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승강기가 없는 곳에 투표소를 설치하지 않고, 계단이 있을 때는 반드시 경사로를 설치한다. 특히, 일본은 선거법에 점자투표와 대리투표가 보장돼 있다. 손이나 팔을 못 쓰는 지체장애인과 판단을 보조받아야 하는 지적장애인은 투표보조인을 통해 대리투표를 할 수 있다.

5월 제19대 대통령선거가 다가온다. 그리고 2018년 6월은 지방선거가 있다.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제6조는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우리가 모니터링한 결과에서 보듯이 아직도 장애인 참정권은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다님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들이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고 참정권을 완전히 보장받는 그 날까지 지속적으로 투표소 편의시설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2016년의 한국영화에는 어떤 장애인들이 등장할까요?

글 류미레 푸른영상 다큐멘터리 감독

2000년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영화 속 장애인 캐릭터'를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가 쌓이고 쌓이자 어떤 경향성이 보이기 시작했고 저는 제 나름의 서랍장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장애인영화가 등장하면 어떤 서랍장에 넣을지 딱 감이 옵니다. 세월이 준 선물이겠죠? 2016년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에서의 발표를 시작으로 '가칭' 장애인캐릭터상을 만들자고 주장하는 중입니다. 다행히 관심 가져주는 분들이 많아져서 한국장애학회,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비마이너 등과 함께 조금씩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2016년에 발표된 한국영화들을 훑어보려고 합니다. <말아톤>의 성공 이후에 다양한 모습과 비중으로 꾸준히 등장하는 장애인 캐릭터들을 살핌으로써 영화인들에게 피드백을 받는 기쁨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늘 지켜보는 눈들이 있다는 것도 알리고 싶습니다.

1. 장애라는 표상에 스며든 고정관념



오랜 시간동안 우리 사회는 장애인의 몸은 '온전하지 못한 몸'으로 여겨며 대다수의 공간에서 배제시켜왔습니다. 배제는 낯설음을 낳고 낯설음은 공포로 이어지지요.

<내부자들-디 오리지널>의 안상구가 기자와 인터뷰를 하다가 갑자기 왼쪽손으로 오른손을 돌



리니 손목 아래가 툭 빠 집니다. <봉이 김선달>의 청나라무사는 얼굴에 흉터가 있고 한 쪽 눈의 눈동자가 뿌영습니다. 나중에 안상구는 격투씬에서 의수를 무기로 쓰고 청나라무사는 뛰어난 무예솜씨로 마지막까지 주인공들을 위협합니다. 한 사람은 폭력배, 한 사람은 무사, 시대가 달라



다른 이름이 붙지만 몸을 쓰는 사람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의 장애는 장애를 가졌음에도 여전히 싸움실력을 자랑하는, 아니 오히려 싸움실력의 빼어남을 증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크게는 관객들에게 ‘낯선 몸’에 대한 본능적 충격을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신, 거기 있어 줄래요?>에는 구개구순열이 등장합니다. 영화의 오프닝에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의 전경과 수상가옥 등이 등장하는데 오지로 보이는 곳에서 봉사활동을 끝내고 돌아가는 나이든 수현은 어린 아이를 안은 노인의 부탁 때문에 홀로 남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클로즈업되면 아이의 입술이 갈라져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신, 거기 있어 줄래요?>의 구개구순열은 같은 시간대를 살고 있지만 과학기술의 발전정도에 따라 달리 대해지는 구개구순열을 통해 오지의 비문명적 성격을 보여줍니다. 비문명은 신비와 연결되며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과거로 가는 알약은 자연스럽게 등장하게 됩니다.

<숨, 사라진 사람들>에는 지적 장애인 상우씨가 등장합니다. 염전노예사건을 모티프로 한 이 영화에서 상우씨는 헤리기자의 취재에 응했다가 염전주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합니다. 상우씨는 헤리기자가 염전사건을 취재하게 만드는 계기이기도 하고 영화의 흐름을 주도하는 키 역할을 합니다. <숨, 사라진 사람들>은 팩트(사실)에 근거하지만 여기에 픽션을 가미한 픽션영화인데 염전에서 노예처럼 노동력을 착취당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지적장애인이었다는 사전지식을 가진 관객들의 입장에서는 반전이 강력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극중 헤리기자의 경우에도 상우씨의 행동을 지적 장애인의 장애특성으로 이해했기에 취재의 정당성을 부여받게 됩니다. ‘지적 장애인은 보호받아야 할 존재’라는 평균적 도덕률이 관객과 등장인물을 속일 수 있는 장치가 됩니다.

<조선마술사>의 보은은 시각장애인입니다. 눈이 안보이기 때문에 손이나 얼굴을 만져본 후에 운명을 맞추는데 아름다우면서도 신비로운 여인입니다. 시각장애인이 예언자나 점쟁이로 등장하는 영화들은 참 많이 있는데 장애에 대해서 사고할 때 어떤 감각에 장애가 있으면 그 대신 다른 감각이 발달할 거라는 착각, 고정관념이 반영된 캐릭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환희의 옆에 머무는 여인들을 긴 침으로 살해하기도 하는,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뭐든 할 수 있는 복잡한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사냥〉에서 기성(안성기)가 목숨을 바쳐 지키려는 양순에게는 지적장애가 있습니다. 엽사들은 수적 우위에 있고 총이나 조명같은 장비도 우위에 있어서 영화를 보는 내내 조마조마한데 충격전이 벌어지니 놀란

양순은 숨어있어야 하는데도 막 소리를 칩니다. 그 장면은 발달장애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 장면이면서도 ‘아, 저렇게 소리치면 들킬텐데’ 라는 걱정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마지막까지 무기력하고 보호받는 존재로만 등장하던 양순이 결정적인 한 방으로 악당을 물리칠 때 그전까지 차근차근 뱉아왔던 지적 장애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단 번에 깨뜨립니다.

〈부산행〉에는 아주 익숙한 설정으로 장애인이 등장합니다. 영화 초반에 이상한 사람이 있다는 승객의 신고로 역무원이 열어본 화장실 안의 사람이 다리를 저는 지체장애인입니다. 행색을 보았을 때 노숙인으로 짐작되는데 이름이 따로 등장하지 않으니 그냥 노숙인이라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부산행〉에는 버스타고 상무 용석이라는 아주 강력한 악당이 등장합니다. 노숙인에 대한 용석의 태도는 용석의 비인간성을 부각시켜줍니다. 반면 착한 주인 공들은 시종일관 노숙인을 보호하고 함께 가려고 합니다. 노숙인의 또 다른 임무는 주인공들이 처한 위기상황을 관객에게 더 처절하게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재빠른 좀비들한테 쫓기면서 살아남아야하는 사람들 중에 지체장애가 있어서 빨리 뛰지 못하는 노숙인이 함께 한다는 사실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조마조마하게 만듭니다.

2. 이야기를 이끄는 동력

〈터널〉에는 시작하자마자 장애인이 등장합니다. 갑자기 무너져 내린 터널 안에 홀로 갇힌 자동차 영업사원 정수가 주인공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거대한 콘크리트 잔해 뿐. 정수가 가진 것은 배터리가 78% 남은 휴대폰, 생수 두 병, 그리고 딸에게 주기 위해 샀던 생일 케이크가 전부입니다. 생수가 두 병이나 있었다는 것은 정수 입장에서는 참으로 다행인 상황인데 그 상황에 장애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름을 3만원만 어치만 넣어달라는 정수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한 주유원 노인은 기름을 가득 넣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정수가 항의를 하자 주유소 사장은 “저번에도 그러시더니...”라며 귀가 어두운 분이라 그렇다고 사과를 합니다. 순순히 넘어가는 정수에게 주유소 노인은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어서 생수를 한 병 더 건네줍니다. 덕분에 관객들은 갇힌 터널 안에서 물병에 눈금을 그어가면서 물



을 마실 때, 다른 조난자에게 물을 줄까 말까 고민할 때, 물을 조금 따랐다가 조금 더 따르며 이기적인 마음과 인간적인 마음 사이에서 고민할 때, 생수가 두 병인 것이 얼마나 극적 효과를 증대시키는지를 실감나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지태, 이다윗, 정성화의 연기변신이 화제였던 <스플릿>에는 자폐성향이 있는 지적 장애인영훈이 등장합니다. 영훈의 장애특성은 영훈이 살고 있는 장애인 생활시설의 교사의 입을 빌어 “지적 장애이고 자폐 성향도 있다”라고 설명됩니다. 우연한 첫 만남 이후 또다른 주인공 철중이 영훈을 알아가는 과정은 관객이 영훈의 장애를 이해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영훈은 오이채를 넣은 자장면 곱빼기와 밀키스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10번 레인이 아니면 실력 발휘가 안 됩니다. 그런 영훈의 특성을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변화해가는 철중과 희진의 모습 덕분에 이 영화는 흥미진진해집니다. 영훈에게 볼링을 가르친 사람은 할머니입니다. 할머니는 반복적인 행동 패턴을 보이거나 제한된 관심사에만 집중을 하는 자폐성 장애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영훈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볼링을 가르치셨겠죠. <스플릿>에는 영훈의 장애특성이 힌트가 되는 반전도 숨어 있는데 발견의 몫은 관객에게 돌립니다. <스플릿>은 기대보다 저조한 흥행성적 때문에 아쉬웠지만 재미도 있고 장애인식도 넓혀주는 좋은 영화입니다.

<남과 여>의 주인공 상민과 기홍은 각각 발달장애 아들과 정서장애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각각 파트너가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사랑에 빠져들 때 등장하는 익숙한 설정이 있죠. 다 정리하고 둘이서 새로운 출발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장애인 자녀를 키운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장애유형이 서로 다릅니다. 함께 하자는 약속을 했지만 두 사람이 각각 다른 선택을 하는 데에는 자녀들의 장애특성이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럭키>와 <나를 잊지 말아요>는 주인공들의 기억상실이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강력한 요소로 등장합니다.

3. 개연성 없는 장치

<스플릿>과 같은 달인 11월에 개봉했고 스포츠 영화였으며 주인공 중 한 명이 장애인인 또 한편의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형>이죠.

<형>의 주인공 고두영은 유도 국가대표 선수였다가 경기 중 사고로 시각 장애인이 됩니다. 사기꾼 형은 이 사건을 빌미





로 감옥에서 나옵니다. 초반에는 꺾끄러운 관계였다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어가는 형제애의 발현이 이 영화의 드라마 곡선을 책임집니다. 장애, 고난, 시련 등등을 슬쩍슬쩍 건드리면서 감정선을 끊지 않고 쪽 이어가지만 개인적으로는 뭔가 좀 허전했습니다. 예를 들면 사고 전에 국가대표선수였더라도 시력을 잃은 후에 다시 유도를 하기까지 어려운 과정이 분명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장애수용의 과정을 꼭 넣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은 장애에 대한 고려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야기의 개연성과 재미를 위해 장애를 불러오려면 최소한의 성의는 있어야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보는 내내 씹쓸했던 영화였습니다.

4. 새로움 혹은 혼란

'2016년 가장 강렬한 추적스릴러'로 꼽혔던 <널 기다리며>에는 희주라는 여성이 등장합니다. 영화가 진행될수록 희주의 캐릭터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납니다. 감정을 배제한 채 또박또박 책 읽는 듯한 발성법, 출소한 기범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서늘한 눈동자. 하지만 경찰서 월급날, 대영은 동료경찰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돈 봉투를 희주에게 건네주며 "오늘도 길 안 잃어버리고 잘 왔다"고 칭찬합니다.

발달장애인 것 같기도 하고 다중인격장애인 것 같기도 한 캐릭터입니다. 희주라는 캐릭터는 그동안 많은 스릴러영화에서 등장했던 장애인 캐릭터들과 많이 다릅니다. 이 다름은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새로움일 수도 있고, 장애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허황됨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모든 것은 연기였다는 한마디 말로 이 고민을 무화시킬 수도 있겠지만 희주 캐릭터는 그동안 수많은 스릴러영화에서 등장했던 장애인 캐릭터와는 약간 다릅니다. 그 다름을 기억 해둬야 합니다.

맺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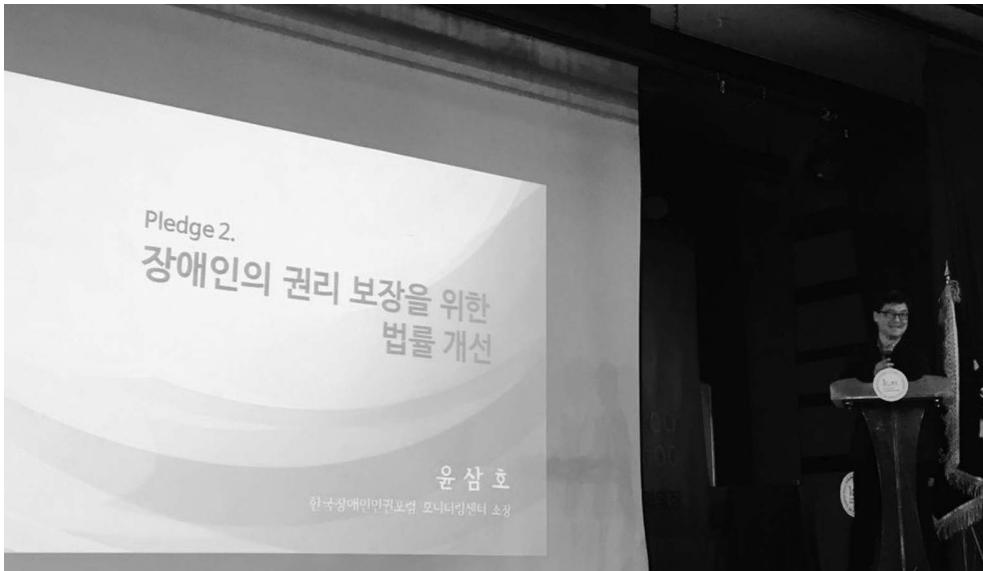
장애코드로 영화를 읽는다는 것은 영화 속에서 장애를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는지, 저 캐릭터는 그동안 보여주었던 장애인 캐릭터의 계보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살피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행위는 어떤 틀을 상정합니다. 그 틀은 고안되는 것도 아니고 발명되는 것도 아닙니다. 현실정합성, 그리고 역사성입니다. 현실정합성과 역사성을 다 고려해봤을 때 2016년의 영화를 뽑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영화를 고르시겠습니까? 언급된 영화들을 한 번 보시면서 함께 고민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포럼은 지금



〈사진 1〉 2월 27~28일 이틀간 보성다비치콘도에서 전국장애인 활동가 정책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좌측 상단의 사진은 광주포럼의 김량대표가 개회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우측 상단은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의사소통과 갈등다루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듣고 있는 활동가들의 모습이다. 마지막 사진은 전국장애인 활동가의 단체 사진이다.

포럼은 지금



〈사진 2〉 3월 6일 오후 서울 동작구 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10회 장애인자립생활의 날 기념 '2017 자립생활(IL) 컨퍼런스 Reset! 장애인 정책에 참석해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률 개선에 대해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윤삼호 소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3〉 최근 경주에 위치한 경북장애인인권포럼이 11번째의 포럼으로 개소식을 가졌다.

포럼은 지금



〈사진 4〉 4월 5~6일 이틀간 서울 동작구 여성플라자에서 2017년 전체 모니터단원 교육이 진행되었다.



〈사진 5〉 4월 7일 대전 라온 컨벤션가람홀에서 국가인권위원회, 대전광역시, 대전장애인인권포럼의 주최로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기념 10주년 토론회(장애인 고용정책을 중심으로 장애인 자립 방안 논의)가 열렸다.

페이스북에서 만나는 센터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페이스북 페이지 (<http://www.facebook.com/ablemonitor>)가 개설되었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 국내외 언론기사, 장애인계 소식, 학술자료, 우리 센터 소식 등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여러분들께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센터는 적극적이고 활발한 소통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두가 편리한 웹·모바일 세상을 꿈꾸는 IT 사회적기업 웹와치

웹와치(주)는 모두가 편리한 웹·모바일 세상을 꿈꾸는 IT분야 최초의 사회적기업으로서, 웹사이트의 장애인 접근성을 심사 평가하는 미래창조과학부 지정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입니다.

웹와치(주)는 웹 접근성 진단 방법과 지표, 평가와 자동평가 보고서 등을 꾸준히 개발해왔으며, 웹 접근성 자동진단 도구인 Watch 1.0을 개발하여 프로그램 등록하고, 웹 접근성 상시 모니터링 서비스인 WMS를 특허등록 하였으며, 모바일 접근성 원격 진단 솔루션 MAARES를 개발하여 특허출원 하는 등 접근성 분야 기술선도기업으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웹와치 주요 사업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국가 공인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의거 미래창조과학부가 지정한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이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보장한 웹사이트에 대해 인증하고 마크를 부여하는 제도.



MA진단·컨설팅 / 품질인증 Mobile App Accessibility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진단·컨설팅과 품질인증



- * MA 품질인증 대상 : Google Android OS 기반 애플리케이션
Apple IOS 기반 애플리케이션

SA진단·컨설팅 / 품질인증 Software & Solution Accessibility

응용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솔루션의 장애인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진단·컨설팅 및 품질인증



- * SA 품질인증 대상 : Microsoft Windows OS 기반 소프트웨어
사용자 에이전트 소프트웨어 / 접근성 지원 소프트웨어
웹 브라우저와 연동되는 RIA 소프트웨어 모듈 및 소프트웨어 솔루션



T. [02]2678-0078

E-mail. webwatch@webwatch.or.kr

차이가 차별이
되지않는 대한민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make the
right real

"장애인권, 이제 실천입니다"

지역모니터링센터

서울 (대표 이권희)	T. 02-833-905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143 에이블허브 4층
부산 (대표 김호상)	T. 051-582-7116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675 우신빌딩 2층
광주 (대표 김 랑)	T. 062-673-0420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중앙로 131번길 17
대전 (대표 안승서)	T. 042-286-0036	대전광역시 동구 옥천로 176번길 15-4 동진프라자 332호
울산 (대표 성현정)	T. 052-289-1254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로 73 세한빌딩 5층
경기 (대표 안미선)	T. 031-906-3095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34, 남정시티프라자 806호
충남 (대표 황영란)	T. 041-631-0691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법원로47번길 새아스프라자 501호
전북 (대표 김미아)	T. 063-228-198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만내4길 6-23
경북 (대표 정현수)	T. 054-701-2088	경북 경주시 알천북로 165-4 101호
경남 (대표 문숙현)	T. 055-283-1313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신월로 42 토월복합상가 303호
제주 (대표 고현수)	T. 064-751-809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천수동로 30, 201호